

#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4. 6. 24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2003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----- 445,227천원

○ 일반회계 ----- 445,227천원

-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----- 65,168천원
- 방역인부임 ----- 2,970천원
- 충전식분무기 구입 ----- 1,800천원
- 태풍“매미”피해 어선복구 ----- 135,630천원
-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----- 4,354천원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(일반) ----- 228,048천원
- 자활근로사업 지원(일반수급자) ----- 6,796천원
- 사회복지업무전담공무원 PDA 지급 ----- 461천원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##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1.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2. 예비비 지출 내역

○ 총 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㉔	지출결정액㉕	잔액(㉔-㉕)	비 고
일반회계	5,864,880	445,227	5,419,653	

○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지출일자	사 유
계	445,227	312,262	115,431	17,534		
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	65,168	65,168	-	0	2003.04.02 2003.08.01	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
방역인부임	2,970	2,871	-	99	2003.10.08	"
충전식 분무기 구입	1,800	1,320	-	480	2003.09.30	태풍“매미”관련 보건위생 취약지 긴급 방역실시
태풍“매미”피해 어선 복구	135,630	20,199	115,431	-	2003.10.24 2003.11.18 2003.12.01 2003.12.19	태풍“매미”피해 어선복구비 국·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분(1,507백만원의 9%)
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	4,354	4,354	-	-	2003.12.05	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부담분
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(일반)	228,048	213,090	-	14,958	2003.12.19	일제조사 결과 대상자 증가로 국·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분
자활근로사업 지원	6,796	4,832	-	1,964	2003.12.31	조건부 수급자(취로형 자활근로) 대상자 증가로 국·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분
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지급	461	428	-	33	2003.12.29	PDA지급대상자 확대로 국고 보조금 추가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분